

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7. 30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7월 2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7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6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7. 30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계장 황해룡)

가. 제안이유

- ① 시상부문이 2개부문(효행선행, 교육문화)으로 제한되어 있어 타부문 공적 기여자는 추천불가, 특히 우리구는 신평·장림공단의 소재로 산업근로 부문을 추가하여 신경계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경영자를 발굴 시상, 그 공적을 널리 선양
- ②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구 간부로 구성되는 위원은 직제개편으로 위원지정이 불합리하여 구 간부를 지정치 않고 매년 심사시 구청장이 임명토록 조정하고 위촉위원 분야 중 구의원을 명시, 포함함으로써 구민여론 수렴과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4조(포상의 종류) : 시상부문 확대 2개부문→3개부문
- 7조(자랑스런 구민상) : 선정기준(산업근로부문 추가)
- 13조(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) : 심사위원 조정
- 14조(포상시기) : 시상인원 2개부문→3개부문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

시상

○ 포상용지 규격, 기념휘장 규격 및 제식 수정(상징마크제정 관련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는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나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하여 공적을 널리 알리고 여러 사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이번에 산업근로부문을 추가하여 2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자	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최진관 위원	현재 효행선행, 교육문화부문에서 근로 부문을 추가하는데 체육이나 기타부문을 추가할 의향은 없는지와 조례 제13조 2항3호에 학교장 및 구의원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는데 구의원은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	체육부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검토하였으나 특정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며 차후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초·중학교 교장 각 1명, 고등학교 3명, 구의원 2~3명으로 위촉할 계획임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1명 전원찬성)